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공개변론서 낙태죄 격론

청구인 “여성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보호해야” 여가부,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법무부 “태아 생명권 시기 나눠 보호할 수 없어” 합헌 의견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헌법이 보호하는 여성의 권리를 강조했고, 법무부 측은 태아 생명권을 앞세웠다. 현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12년 합헌 결정 당시 보호관리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제한했는데, 누락된 임신 여

성의 건강기분권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 안전한 낙태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측은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에 미치지 못해 연간 약 17만 건의 임신중절수술이 행해지는 걸로 추정되고, 검찰도 10건 이하로 기소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대상 조항은 태아생명을 위한 수단 이 아니고 선언으로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체계가 특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키고 태아 생명보호는 국가 의무이며, 태아의 생명은 단계적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측은 “태아의 구체적인 성장정도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없다”며 “생명의 특징인 연속성을 고려하면 어느 한 시점을 택해서 보호 법익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부부처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상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제한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현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상반된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위원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진성 현재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재판관 이선애, 서기석, 안창호, 김이수, 이현재 소장, 재판관 김창중, 강일원, 조용호, 유남석.

장을 비롯해 재판관 4명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현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성추행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

있으나마나 ‘낙태죄’...年16만건 수술, 행정처분은 5년간 ‘27건’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사가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하면 한달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2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는 조사까지 나왔지만 형

법이 수술 당사자인 여성과 의료진 양쪽에 죄를 묻고 있어 적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6년만에 공개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사문화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신중단 수술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27명이었다. 2013년 1건과 2014년 3건, 2015년 8건, 2016년 13건, 지난해 2건 등 27건에 대해 처분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형법 207조1항에 따라 의료진의

인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연간 임신중단 수술 건수를 35만590건과 16만8738건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선 16~44세 가임기 여성 2006명중 5명중 1명꼴(21.0%)인 422명이 임신중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 행위가 보건당국에 확인된 건 1년에 5건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여가부 “사문화조항...협박 수단으로 악용돼” 복지부, 여성 1만명 대상 실태조사 10월 발표

낙태 시술은 불법이다.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헌법 규격에서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과 2010년 ‘인공

복지부 관계자는 “형법에서 낙태죄는 당사자인 여성 본인과 담당의사가 벌을 받게 돼 있다”며 “서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임신중단이라는 상황 자체가 노출되지 않아 신고 건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1항은 임부가 낙태할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270조1항은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하게 한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낙태죄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에 낙태죄를 둘러싼 사문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23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위헌 취지로 현재에 의견서를 내면서 사문화 문제를 제기했다. 의견서에서 여가부는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낙태수술을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임부와 낙태하게 한’ 사람에게 의한 협박 또는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태죄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은 24일 열린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에서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2년 같은 쟁점이 다뤄진 헌법소원사건에서 현재는 6인 이상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4(위헌)대 4(합헌)로 합헌 결정을 내린 당시 현재도 결정문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현재보다 낙태가 민연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재가 올해 1월 의견을 묻자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대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보여주는 임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8년 만에 진행 중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에 답변하면서 실태조사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8월 이전 조사(400명)때보다 많은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분석 결과를 10월 일만에 공개한다.

뉴스

지역구관리 마케팅장소 정보의뢰 전화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